

##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」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6년 3월 18일

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



### 1. 제안이유

최근 청년들이 탈모로 인해 정신적 위축과 삶의 질 저하 등을 겪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, 관내 청년들의 탈모 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의 정신적, 육체적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정의 (안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(안 제3조)
- 다. 시행계획의 수립 (안 제4조)
- 라. 지원대상, 내용 및 방법 (안 제5조 ~ 제6조)
- 마. 중복 지원 금지(안 제7조)
- 바. 비밀 준수의 의무 (안 제8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[참조 : 의회사무국장,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5, 전화 : 02)3425-7388, FAX : 02)3425-7292, E-mail : soymilk1714@gangdong.go.kr]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